

결 정

2018 - 2040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5.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6.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주 문

국민일보 2018년 2월 2일자 4면 「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세계최초발명특허신기술」 제목의 광고, **한겨레** 2월 2일자 9면 「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세계최초발명특허신기술」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2월 9일자 35면 「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세계최초발명특허신기술」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2월 10일자 A18면 「노벨상이 밝혀낸 10년 젊어지는 비법/“페이스핏”」 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2월 19일자 A30면 「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 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2월 19일자 24면 「10년 젊어지는 비법 “페이스핏”」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6개지 적시 광고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광고내용을 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호흡, 폐건강, 비염, 코골이, 피부관리』를 페이스핏 하나로 관리하라며 의학적 효능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